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3일, 김문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문수의원)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
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
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교원지위법」에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원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는데,

유사한 범주의 위원 수가 「교원지위법」과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내용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할 학교 교사 위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 위원의 수에 대한 내용을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52호)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시 교사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① 김문수의원안은 그 범위를 ‘관할 학교’의 교사로 한정하고 비중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백승아의원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교사인 위원을 ‘10분의 2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비중으로 교사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김문수의원안은 교육감·교육장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반면, 백승아의원안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음.

② 그 외에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백승아의원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나, 김문수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③ 부칙에서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직위와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두 개정안 모두 동일하게 규정함.

두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시 교사 위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범위, 비중, 준수 의무 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단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의원, 김문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